

신·구 조문대비표

(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유의사항)</p> <p>이 규정에 <u>의한</u> '적극행정 면책제도'는 업무수행의 동기 와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2조(유의사항)</p> <p>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정의)</p> <p>1. "적극행정"<u>이라 함은</u>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"면책"<u>이라 함은</u> '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·<u>비효율·손실 등</u>'(이하 "면책대상행위"라 한다)과 <u>관련하여</u>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규칙」(이하 "감사규칙"이라 한다)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"불이익한 처분요구 등"<u>이라 함은</u> 감사규칙에 따른 <u>신분상 징계요구와 훈계 또는 경고[기관경고를 포함한다, (이하 "징계요구 등"이라 한다)]</u>를 말한다.</p> <p>4. "공무원 등"<u>이라 함은</u> 감사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과 임·직원을 말한다.</p>	<p>제4조(정의)</p> <p>1.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<u>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</u>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규칙 (이하 "감사규칙"이라 한다)」----- ----- -----. 3. ----- <u>-이란</u> ----- ----- <u>징계, 경고,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.</u> ----- 4. ----- 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면책대상)</p> <p>이 규정에 <u>의한</u> 면책대상은 제4조제3호의 '불이익한 처분요구 등'과, 같은 조 제4호의 '공무원 등'이다.</p>	<p>제5조(면책대상)</p> <p>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면책요건)</p> <p>이 규정에 <u>의한</u>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.</p> <p><u>1. 공익성</u> :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 의 비위가 없을 것</p> <p><u>2. 타당성</u> : 법령상의 의무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익증진 등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</p> <p><u>3. 투명성</u> : 의사결정의 목적·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(단,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·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가능)</p>	<p>제6조(면책요건)</p> <p><u>①</u> 이 규정에 <u>따른</u>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.</p> <p><u>1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의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</u></p> <p><u>2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</u></p> <p><u>3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</u></p> <p><u>4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</u></p> <p><u>②</u>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'나'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.</p> <p><u>1.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</u></p> <p><u>2.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</u></p> <p><u>3.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</u></p> <p><u>4.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면책제도 안내 등)</p> <p>감사담당관은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통지하거나, 실지감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하여</u>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면책제도 안내 등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따라</u> -----.</p>
<p>제9조(면책심의위원회 설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<u>행정 관리국장</u>으로 하고, 부위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,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제외한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③ 면책심사 대상자가 6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<u>행정관리국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보건소장과 광진구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면책심의위원회 설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행정국장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행정국장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1조(심의회 개최 등)</p> <p>①~③ 생략</p> <p>④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<u>의하여</u> 관리한다</p>	<p>제11조(심의회 개최 등)</p> <p>①~③ 생략</p> <p>④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<u>따라</u> 관리한다.</p>
<p>제12조(징계양정 통보)</p> <p>감사담당관이 <u>감사결과에 대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'감사결과 처분 예정사항 통보서'(이하 "처분예정통보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징계양정 통보)</p> <p>----- <u>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처분에 대한 비위사항에 대하여 -----</u></p> <p><u>"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" '(이하 "조치예정통보서"라 한다)-----.</u></p> <p>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면책심사 신청)</p> <p>② 제12조에 의하여 처분예정통보서를 받은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생략</p> <p>1. ~3 생략</p>	<p>제13조(면책심사 신청)</p> <p>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는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-----.</p> <p>③ 생략</p> <p>1. ~3 생략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</p>
<p>제14조(면책심사 처리)</p> <p>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,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,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면책심사 처리)</p> <p>① ----- --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심사의견)</p> <p>2. 감경의견 :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, 제10조에 의한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	<p>제15조(심사의견)</p> <p>2. 감경의견 :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, 제10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p>
<p>제16조(심사결과의 처리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구청장은 심의회가 통보한 심사의견이 면책인 경우, 그 면책 대상자가 징계요구대상자인 때에는 면책처분과 함께 감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'훈계'하거나 제2호에 의하여 '경고'하여</p>	<p>제16조(심사결과의 처리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따라 ----- ----- 따라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야 한다.</p> <p>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<u>제6호서식에</u>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----.</p> <p>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<u>제7호서식에</u>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1호서식]	[별지 제1호서식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10px;">면책심사신청 안내</div> <p>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○○○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신청권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※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</p> <p>2. 신청기간 : 처분예정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</p> <p>3. 적극행정 면책요건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성 :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타당성 : 법령상의 의무이행,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,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재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·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투명성 : 의사결정의 목적·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※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을 수수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범죄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</p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10px;">면책심사신청 안내</div> <p>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○○○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신청권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※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</p> <p>2. 신청기간 : 처분지시 이전</p> <p>3. 적극행정 면책요건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※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을 수수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범죄의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2호서식]	[별지 제2호서식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10px;">감사결과 <u>처분</u> 예정사항 통보서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수신 :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발신 :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소속</td> <td>직급</td> <td>성명</td> <td>비위 요지</td> <td><u>처 분</u> 예정사항</td> <td>근거 법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비고 :</td> </tr> </table>	수신 :						발신 :						소속	직급	성명	비위 요지	<u>처 분</u> 예정사항	근거 법규							비고 :				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10px;">감사결과 <u>조치</u> 예정사항 통보서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수신 :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발신 :</td> <td colspan="5"></td> </tr> <tr> <td>소속</td> <td>직급</td> <td>성명</td> <td>비위 요지</td> <td><u>조 치</u> 예정사항</td> <td>근거 법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6">비고 :</td> </tr> </table>	수신 :						발신 :						소속	직급	성명	비위 요지	<u>조 치</u> 예정사항	근거 법규							비고 :					
수신 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신 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속	직급	성명	비위 요지	<u>처 분</u> 예정사항	근거 법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 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신 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신 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속	직급	성명	비위 요지	<u>조 치</u> 예정사항	근거 법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고 :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개 정 안

[별지 제3호서식]

면책심사 신청서

「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.

신 청 인					
심 사 대 상 자					
사 명 명	감 사 연 월 일	감 사 자			
감 사 지적사항					
면 책 심 사 신 청 사 유	공익성				
	타당성				
	투명성				
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	기관장(또는 감사부서 책임자) 확인 (인)				

※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

[별지 제3호서식]

면책심사 신청서

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		
구체적 판단기준 내용	해당여부	첨부서류
<u>1.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</u>		
<u>2.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</u>		
<u>3.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</u>		
<u>4.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</u>		
<u>가.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</u>		
<u>나.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</u>		
<u>다. 법령에서 정한 행정질 차를 거쳤을 것</u>		
<u>라.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</u>		
<u>5. 기타</u>		

※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 제13

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
일

신 청 부서(기관)
인 직 성
명 명 명 (서명 또는
인)

광진구청장 귀하

현 행

[별지 제4호서식]

면책심사조서

감 사 기 관 명		감사 연월일	
전 명			
신 청 인			
심 사 대 상 자			
정 계 등 양 정 (안)			
비 위 내 용			
신 청 사 유	공 의 성		
	타 당 성		
	투 명 성		
감 사 담당관 검 토 의 견	공 의 성		
	타 당 성		
	투 명 성		
	종합의견		

개 정 안

[별지 제4호서식]

면책심사조서

감 사 부 서 명	감 사 연월일	
전 명		
신 청 인		
심 사 대 상 자		
정 계 양 정 (안)		
비 위 내 용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의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의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		
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		
종 합 의 견		